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지방협력회 구성원에 시·도교육감 포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72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1.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교육감을 포함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 부교육감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

1. 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u><신 설></u>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2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교육감(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여 2022년부터 설치·운영된 기구로서, 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③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④지자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은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기획재정부장관¹⁾, ④교육부장관, ⑤행정안전부장관, ⑥국무조정실장, ⑦법제처장, ⑧시·도지사, ⑨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⑩지방시대위원장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는 ①기획재정부의 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²⁾, ②교육부차관, ③행정안전부차관, ④국무조정실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⑤법제처 차장, ⑥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⑦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자가 구성원 중 지명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3회 개최되었으며, 지역고용 활성화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6. 1. 2.부터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됨.

2) 2026. 1. 2.부터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과 기획예산처차관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현황>

		안 건
2022	제1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 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제2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방안 개정안 2.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3.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4.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2023	제3회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2.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3. 중앙권한 지방이양 4.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제4회	1.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계획
	제5회	1.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2.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4.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5.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2024	제6회	1. 의사 집단행동 대응 2.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제7회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제8회	1.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2.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4.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5.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개정안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학예 관련 사항에 대한 지방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이며,

교육감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사무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측면³⁾을 고려할 때,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의 의견을 중앙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다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안건을 다루고 있는 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안건을 심의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24. 2. 27.)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①시·도의회, ②시장·군수·구청장, ③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 각 협의체의 대표자⁵⁾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무협의회에도 해당 협의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중 지명하는 1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의 경우에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⁶⁾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실무협의회에도 전국 시도교육감

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대표자가 구성원 중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시·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가 이미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도 현행법령에 따라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점 및 17개 시·도의 교육감이 포함되는 경우 구성원 증가로 인한 효율적 회의운영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시도지사협회는 사무 범위가 교육·학예에 국한되는 교육감·부교육감을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개정안과 같이 교육감이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교육감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정책 전문가인 부교육감의 실무협의회 참여 또한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